

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

나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광산안전상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명령

제20조제1항제4호다목 중 “제8항”를 “제9항”로 한다.

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광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·해임 신고의 접수
2.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,

제2조(업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) 제20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·해임 신고접수 처리 위탁 기관에 안전사무소 자료 이전, 전산시스템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위탁업무 수행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행하고 위탁업무 수행 전 기간은 사무소장이 계속하여 수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①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 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. 1. ~ 3. (생 략) 4.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 명령 나. <u>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수리</u> 다. 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른 검직의 승인 5. ~ 11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-----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산 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거나 광산 안전상 추 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광업권 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산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명령</u> 다.----- <u>제9항</u> ----- ----- 5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 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</u>

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
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광산안전법 제13조제3항에
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·
해임 신고의 접수

2. 광산안전법 제13조제5항에
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
자 선임 신고의 접수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2
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위탁에 대한 경과조치)

제20조제3항의 광산안전관리직
원 선임·해임 신고접수 처리 위탁
기관에 안전사무소 자료 이전,
전산시스템구축 등의 기간을 고
려하여 위탁업무 수행은 2026
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행하고
위탁업무수행 전 기간은 사무소
장이 계속하여 수행한다.